

## 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1-22호

###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(등기)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(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1년 05월 21일

### 방송통신사무소장

1. 공고사유 :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1. 05. 21. ~ 2021. 06. 04.(15일)
3. 공시송달 대상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1	김동민	1997. 07. 31.	0178200274100009752	₩3,862,500	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30번길
2	김명운	1970. 12. 12.	0178210274100001375	₩250,000	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팽나무4길
3	김명운	1970. 12. 12.	0178210274100001376	₩250,000	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팽나무4길
4	김명운	1970. 12. 12.	0178210274100001377	₩250,000	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팽나무4길
5	김명운	1970. 12. 12.	0178210274100001378	₩250,000	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팽나무4길
6	김명운	1970. 12. 12.	0178210274100001379	₩250,000	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팽나무4길
7	김명운	1970. 12. 12.	0178210274100001380	₩250,000	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팽나무4길
8	김명운	1970. 12. 12.	0178210274100001381	₩250,000	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팽나무4길
9	김명운	1970. 12. 12.	0178210274100001382	₩250,000	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팽나무4길
10	김명운	1970. 12. 12.	0178210274100001383	₩1,000,000	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팽나무4길
11	김영을	1965. 07. 13.	0178200274100000065	₩3,780,000	전라남도 목포시 상동로
12	김영을	1965. 07. 13.	0178200274100005588	₩19,230,000	전라남도 목포시 상동로
13	김영을	1965. 07. 13.	0178200274100005315	₩5,557,500	전라남도 목포시 상동로
14	배동윤	1973. 04. 10.	0178200274100009939	₩15,450,000	경기도 의정부시 충의로37번길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15	백기봉	1978. 07. 06.	0178200274100000982	₩18,000,000	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
16	비즈앤박스	134111-0166***	0178200274100001628	₩11,947,500	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 대로275번길
17	신희창	1969. 03. 13.	0178200274100001790	₩47,790,000	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노 루목로
18	오근호	1993. 12. 27.	0178210274100001103	₩7,500,000	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 학로27번길
19	오성주	1963. 11. 18.	0178200274100002460	₩6,128,500	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 로
20	이계만	1956. 08. 08.	0178200274100001890	₩6,637,500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 로41가길
21	이현금	1959. 12. 10.	0178200274100000999	₩18,000,000	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오 로3길
22	이호정	1998. 05. 15.	0178200274100008967	₩3,952,500	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 로332번길
23	임충규	1973. 07 .21.	0178210274100001257	₩200,000	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39길
24	임충규	1973. 07 .21.	0178210274100001258	₩200,000	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39길
25	임충규	1973. 07 .21.	0178210274100001259	₩200,000	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39길
26	임충규	1973. 07 .21.	0178210274100001260	₩200,000	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39길
27	임충규	1973. 07 .21.	0178210274100001261	₩400,000	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39길
28	임충규	1973. 07 .21.	0178210274100001262	₩300,000	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39길
29	임충규	1973. 07 .21.	0178210274100001263	₩200,000	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39길
30	임충규	1973. 07 .21.	0178210274100001264	₩400,000	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39길
31	임충규	1973. 07 .21.	0178210274100001265	₩300,000	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39길
32	임충규	1973. 07 .21.	0178210274100001266	₩600,000	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39길
33	장대경	1970. 12. 15.	0178200274100001893	₩6,168,000	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 풍로
34	장대연	1994. 07. 03.	0178200274100000012	₩3,907,500	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 로
35	정윤호	1980. 08. 05.	0178200274100001633	₩2,000,000	경기도 광명시 광이로59번 길
36	조영창	1952. 12. 07.	0178200274100001896	₩2,292,000	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 향교로20번길
37	한상규	1962. 10. 24.	0178210274100001223	₩950,000	강원도 춘천시 춘천로167 번길
38	홍범석	1959. 10. 16.	0178200274100000009	₩3,907,500	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
39	황인철	1993. 03. 28.	0178200274100009529	₩3,862,500	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 로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40	㈜글로벌셀러 아카데미	110111-4558***	0178210274100009048	₩15,450,000	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 로150길
41	㈜바른양성평 등교육원	110111-7375***	0178200274100008969	₩3,952,500	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
42	㈜사이퍼스	284111-0177***	0178200274100006341	₩7,725,000	경기도 남양주시 늘을2로 14번길
43	㈜에스피멤버 스	110111-6786***	0178200274100008974	₩7,905,000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 로25길
44	㈜우리경매피 앤디	135811-0258***	0178200274100005230	₩11,475,000	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 대로
45	㈜유피넷	110111-5877***	0178200274100005872	₩8,895,000	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
46	㈜일광건설개 발	110111-5651***	0178200274100005598	₩9,885,000	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 로114길
47	㈜타임파트너 스	110111-6953***	0178200274100008191	₩3,997,500	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 로
48	㈜텔리아네트 웍스	110111-4069***	0178200274100010124	₩7,725,000	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 로40가길
49	㈜티엔피네트 웍크	110111-3709***	0178200274100006190	₩6,637,500	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
50	㈜회원권프로	110111-4907***	0178200274100000039	₩3,907,500	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 로

4. 문의처 :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

(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, ☎ 02-6735-8130, 8139, 8140, 8142)

5. 광고내용 :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6. 가산금 및 증가산금 등 안내

가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%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,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.2% 증가산금(重加算金)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.

나.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, 가산금 3%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%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.

다.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,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국세징수법」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.

라. 또한,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,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